

#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

## I. 근거

- 법 4조, 제6조, 제13조, 제19조
  - 영 제4조, 제10조, 시행규칙 제2조
-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제1항제10호

## II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심사기준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I. 총 칙		
1. 정의	○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“근로자대표” 별도 명시 여부	○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“근로자대표” 정의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로 명시될 것
2. 적용	○ 사업정보 명시 여부	○ 제도를 설정(변경)하는 사업의 명칭 및 주소 등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가 명시될 것
II.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		
1. 사업자 선정	○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결과 명시 여부	○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하여 명시</li> <li>- 선정절차 및 기준 제시도 가능하나, 이 경우 사업자 선정(변경)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</li> <li>-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(自社)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</li> </ul>
2. 간사기관	○ 간사기관 선정 여부	○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(이하 “운용관리기관”이라 함)가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할 것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3.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</p>	<p>○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 제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를 간사기관으로 명시할 것</li> <li>- 간사기관의 지정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</li> <li>○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(변경 포함)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- 사업자를 규약에서 특정하는 경우 규약의 신고(변경 포함) 시에 규약에 별지로 작성·제출하도록 하고, 규약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등으로만 제시하여 사업자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신고 없이 사업자 선정(변경)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- 사업자 선정사유서에는 선정 절차, 평가 기준 및 방법, 선정 결과(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사유 포함),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</li> </ul>
<p><b>Ⅲ. 가입자 및 가입 기간</b></p> <p>1. 가입대상</p>	<p>○ 가입대상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될 것</li> <li>- 특정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할 수도 있음</li> <li>- 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</li> <li>- 특정 시점 이전(이후)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</li> <li>○ 모든 근로자를 당연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</li> <li>-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운용하거나 퇴직연금제도 유형(DB, DC, 혼합형)을 복수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, 적용대상을 이 제도에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정할 수도 있음</li> <li>-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의 열거도 가능</li> </ul>
<p>2.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</p>	<p>○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입자격의 취득·상실의 사유 및 일자가 명시될 것</li> <li>-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 착안사항	심사기준
3. 가입기간	○ 가입기간 명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될 것</li> <li>○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명시될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제도 설정 전에 이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(이하 “과거근로기간”이라 함)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음</li> <li>-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
<b>IV. 급여</b>		
1. 급여수준	○ 급여수준 및 산정기준 명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그 금액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으로 규정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시금이 아닌 연금(annuity)으로 규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일시금으로 환산·변경하여 규정되도록 할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상시 4인 이하 사업의 경우 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0.12.1.~2012.142.31.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 퇴직급여 수준의 50%로 정할 수 있음</li> <li>○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정할 경우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2조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,</li> <li>- 산정기준의 개선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방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☞ 사용자가 별도 산정방식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DC 제도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함</li> </ul>
2. 급여종류	○ 급여의 종류 명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여의 종류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. 이 외의 부가적인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그 내용 및 수준이 명시되어야 함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3. 수급요건	○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명시 여부	○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,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될 것  ○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될 것
4. 지급사유 발생	○ 지급사유 발생 사유 명시 여부	○ 사망, 퇴직,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또는 제도 폐지 시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될 것  ☞ 제도 중단의 경우 급여의 지급 사유 발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  ○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게 가입대상에는 포함하면서 급여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경우  -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
5. 급여지급기한 등	○ 지급기한 및 전액 지급 원칙 명시 여부	○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명시될 것.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것으로 명시 가능  ○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 ○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비율(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- 이 경우 이 제도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은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될 것
6. 급여의 지급	○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명시 여부	○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될 것  - 가입자는 이 제도 가입 이후 ( )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급여를 이전받을 계정 지정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- 사용자는 급여 이전을 위해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안내

심사항목	중점 착안사항	심사기준
<p>7. 급여의 지급절차</p>	<p>○ 지급절차의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확인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</li> <li>- 가입자가 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전됨</li> <li>-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'자산관리기관'이라 함)으로 명확화</li> <li>- 자산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특정 사업자로 명시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</li> <li>○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함</li> <li>○ 급여의 지급지시 등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명시될 것</li> <li>-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가 이전되도록 지시하여야 함. 이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</li> <li>-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</li> </ul>
<p><b>V.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</b></p>		
<p>1.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</p>	<p>○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. 이 경우 납입주기는 년, 분기, 월 단위로 정할 수 있음</li> <li>○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산정방식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명시될 것. 이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한다고 명시되어야 함</li> </ul>
<p>2. 급여 지급능력 확보</p>	<p>○ 최소적립금 수준 및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(이하 "최소적립금"이라 함) 이상을 적립금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li>- 제도 설정일부터 ~ 2013.12.31.: 60%</li> <li>- 2014.1.1. ~ 2015.12.31.: 70%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2. 적립 부족의 해소</p>	<p>○ 적립 부족의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6.1.1. ~ 2018.12.31.: 80%</li> <li>- 2019.1.1. ~ 2020.1.1.: 90%</li> <li>- 2020.1.1. 이후: 100%</li> <li>○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(제2017-68호)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이 적립되도록 명시되어야 함</li> <li>○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이 경우 사용자는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고 명시되어야 함</li> <li>○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%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li>-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납입 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획서”라 함)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</li> <li>- 재정검증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함</li> <li>-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</li> </ul>
<p><b>VI. 운용·자산관리 업무 계약의 체결, 해지 및 이전</b></p> <p>1.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</p> <p>2.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</p>	<p>○ 운용관리업무 계약체결내용 명시 여부</p> <p>○ 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내용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시 포함할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li>- 법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</li> <li>○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과의 계약체결에 포함할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li>-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포함</li> <li>○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시 포함할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3. 수수료의 부담  4. 계약해지 및 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수료의 부담주체 명시 여부</li> <li>○ 계약해지 사유 및 이전절차 명시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29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</li> <li>○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명시될 것</li> <li>○ 제도 폐지,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,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,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말소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명시될 것</li> <li>○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(제도 폐지는 제외) 사용자가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/ul>
<b>VII. 제도의 폐지 · 중단</b>		
1. 제도의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도의 폐지 사유 명시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도 폐지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되도록 하여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</li> <li>○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될 것</li> <li>○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 신고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li>○ 사용자가 제도 폐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(적립금,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,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)이 명시될 것</li> <li>○ 사용자가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으로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될 것</li> </ul>
2.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입자가 제도 폐지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명시될 것</li> <li>○ 가입자별 중간정산금은 이 제도에 따른 적립금을 가입자별 근속기간·평균임금과 이 제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안분·산정하고,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명시될 것</li> <li>○ 사용자가 제도 폐지로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등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함</li> </ul>
3. 제도의 운영중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단 사유 및 중단 시 처리 방안 등 명시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중단 사유는 합리적 사유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 착안사항	심사기준
<p><b>VIII.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</b></p> <p>1. 운용현황의 통지</p> <p>2. 가입자 교육</p>	<p>○ 운용현황의 통지 내용, 시기, 방법의 명시 여부</p> <p>○ 교육 사항, 방법 및 절차 등의 명시 여부</p>	<p>☞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</p> <p>- 고용노동부장관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는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</p> <p>○ 제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다음의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</p> <p>- 중단 사유 및 중단일, 재개시 일정,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계획 등 처리방안</p> <p>- 가입자 교육의 실시</p> <p>- 급여 지급의 요청,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</p> <p>○ 제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명시하여야 함</p> <p>- 급여의 지급</p> <p>-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</p> <p>- 급여의 지급, 적립금의 운용,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업무</p> <p>○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</p> <p>○ 이 경우 통지 방법은 우편 발송, 서면 교부,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용관리업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함</p> <p>○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과 확정급여형에 관한 추가 사항이 교육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</p> <p>○ 제도 일반사항 및 확정급여형 추가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. 특히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은 제도 설정 후 최초 교육은 반드시 교육자료의 우편 발송, 직원연수·조회·회의·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</p> <p>○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,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</p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<b>Ⅸ. 기타</b></p> <p>1. 수급권의 보호</p> <p>2.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전환</p> <p>3. 근로자대표 동의 확인서</p>	<p>○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의 명시 여부</p> <p>○ 법 제32조제4항 사유 발생시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</p> <p>○ 제도 도입 과정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 여부</p>	<p>○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야 함</p> <p>○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만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함</p> <p>○ 가입자가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담보 대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</p> <p>○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전환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</p> <p>☞ 사용자는 별도 산정방식을 정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기회를 부여해야 함(두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)</p> <p>- 여러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전환권을 부여도 가능</p> <p>○ 제공된 샘플 양식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는데 진행한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하도록 지도</p> <p>-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약 신고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함</p>

### Ⅲ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심사기준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I. 총 칙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li> </ul>
II.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li> <li>- 단, 간사기관 선정 의무는 없음</li> <li>- 선정절차 및 기준만 정하는 경우, 추후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업자를 변경(삭제 포함)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</li> </ul>
III. 가입자 및 가입 기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li> </ul>
IV. 부담금		
1. 부담금의 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용자 부담금 수준 및 가입자 추가부담 가능 여부 등 명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</li> <li>○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할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</li> <li>○ 상시 4인이하 사업의 경우 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0.12.1.~2012.142.31.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 부담금의 50%로 정할 수 있음</li> <li>○ 부담금 산정기간에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나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있어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의 부담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</li> <li>○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</li> </ul>
2. 부담금의 납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기 납입일 명시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명시될 것</li> <li>- 납입 주기는 연납, 분기납, 월납 등 형태로 정할 수 있음</li> <li>- 정기 납입일(주기)은 연말(년 1회)로 하고, 미리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3. 부담금 미납 시 처리</p>	<p>○ 미납 시 지연이자 적용 등의 명시 여부</p>	<p>월, 분기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</p> <p>○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이 명시될 것</p> <p>- 다만,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. 이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은 정기 납입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</p> <p>☞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의 운용손실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도입.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의 정산 등에 필요한 기간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대 연장기간은 정기 납입일로부터 <b>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도</b></p> <p>○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</p> <p>○ 지연이자율은 영 제11조 구분에 따른 이자율로 명시될 것</p>
<p><b>V. 급여</b></p> <p>1.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,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, 급여의 지급, 급여의 지급절차</p>		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
<p>2. 미납 부담금 등의 납입</p>	<p>○ 미납 부담금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</p>	<p>○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</p> <p>- 이 경우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도 함께 납입되도록 명시</p>
<p><b>VI. 적립금의 운용</b></p> <p>1.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</p> <p>2.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</p>	<p>○ 운용방법의 선정, 운용지시에 관한 사항의 명시 여부</p> <p>○ 운용방법의 변경 주기,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여부</p>	<p>○ 가입자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 직접 운용지시하도록 명시될 것.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 운용방법이 제시되도록 할 것</p> <p>○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</p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3.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</p> <p>4. 적립금 운용방법이 정보제공</p>	<p>○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주기 및 방법의 명시 여부</p> <p>○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및 방법의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경우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이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, 어느 때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임.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가능</li> <li>- 사용자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·부담(중도해지이율 적용, 중도해지 수수료 등)에 대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될 것</li> <li>○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</li> <li>○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명시 되도록 할 것</li> <li>○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될 것</li> <li>-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, 운용방법별 과거 운용실적, 운용방법별 발생하는 비용부담(운용수탁보수, 중도해지 또는 환매 수수료 등),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지급보장의 정도 등</li> <li>○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우편 발송, 서면 교부,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될 것</li> </ul>
<p><b>VII.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</b></p> <p>1. 수급권의 보호</p> <p>2. 중도인출</p>	<p>○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의 명시 여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li> <li>○ 중도인출의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될 것</li> <li>- 중도인출의 사유는 영 제2조제1항으로 한정</li> <li>- 가입자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</li> </ul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<b>VIII. 운용·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, 해지 및 이전</b></p> <p>1.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</p> <p>2. 수수료의 부담</p> <p>3. 계약해지 및 이전</p>	<p>○ 수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</p>	<p>☞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사유 판단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되는데 시일 소요될 경우 불필요한 다툼 발생</p> 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 <p>○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·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명시될 것</p> <p>○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·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원칙으로 명시될 것</p> <p>○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.7.26. 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3년 7월 26일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위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</p> <p>- 이에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거나 가입자 추가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면 2013.7.26.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종전 규정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음</p> 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
<p><b>IX. 제도의 폐지·중단</b></p> <p>1. 제도의 폐지</p> <p>2.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</p>	<p>○ 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</p>	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 <p>○ 가입자가 제도 폐지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될 것</p> <p>○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</p>

심사항목	중점착안사항	심사기준
<p>3. 제도의 운영 중단</p> <p><b>X.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</b></p> <p>1. 운용현황의 통지</p> <p>2. 가입자 교육</p> <p><b>XI. 기타</b></p>	<p>○ 운용현황의 통지 내용, 시기, 방법의 명시 여부</p> <p>○ 교육 사항, 방법 및 절차 등의 명시 여부</p>	<p>한다고 명시될 것</p> 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 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 <p>○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,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(고용노동부장관 고시)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</p> <p>○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과 확정기여형에 관한 추가 사항이 교육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</p> <p>○ 교육방법 및 절차 등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 <p>○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과 동일</p>

## IV.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혼합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심사기준

-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될 것
  -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준에 100분의 ( ① )을 곱한 수준
  -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에 100분의 ( ② )을 곱한 수준

※ 단, ① + ②의 합은 100 이상이 되어야 함
- 그 외 사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과 동일함

## V. 조치

- 심사항목별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규약의 내용을 개선할 것을 지도 (보완 요청)